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35
----------	------

2020년 12월 17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3. 상정일자 :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 1. 제안이유

-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적용받는 대상 학교에 대해 수업료 및 입학금 관련 업무 처리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모든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상위 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문구에 맞게 정비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를 중심으로 개정(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법 제10조의2가 신설되어 조례 목적에 동 조문 추가(안 제1조)
- 다. 조문 전단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후단 단서에는 법 제10조의2제3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의 대상”을 단일 조문으로 규정한 것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라. 현행 제4호와 같이 1개 호로 합쳐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를 별도의 호로 각각 구분(안 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 마. 특성화고등학교는 재정결함보조를 받아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 해당되지만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이 부여된 학교로서 설립 목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로 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항제5호)
-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을 준용하여 학교에서 휴업한 경우 수업료를 면제하는 대상 기간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명확히 함(안 제3조제5항)

- 사. 공립·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이므로 동 학교에 대해 입학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은 실효성이 없어 삭제함(안 제3조)
- 아.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방법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를 따르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자. 무상교육 대상 학교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학교에 전출입하는 학생에 대한 징수방법은 삭제하고,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할 계산 징수방법을 신설하여 업무 명확화 (안 제4조제4항)
- 차. 무상교육 대상 학교에서 전출하는 학생에게는 수업료를 받지 않아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무상교육 제외 대상 학교에서 전출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일할 계산 반환방법으로 현실화(안 제6조제2항)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035호로 제출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공·사립학교의 수업료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sup>1)</sup> 및 같은 법에 따라 위임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립의 각급학교 수업료는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균일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사립 유치원 및 사립초등학교, 일부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장이 수업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sup>2)</sup>

○ 따라서 그동안 무상교육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 동 조례에 따라 수업료를 징수하였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sup>3)</sup>에 따라 고등학

- 
- 1)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징수금액) 공·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5.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 참고로, 공립유치원, 공·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참고.
- 3)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교 무상교육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업료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왔습니다.

-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금년 제3차 추경을 통해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을 한학기 앞당겨 시행함으로써,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교무상교육이 사실상 2020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는바,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용어와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동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나. 주요 조문에 대한 의견

- 동 조례안 제4조제4항은 학생들이 전·출입할 경우 현행 조례 제4조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징수규정을 삭제하고, 학교에 학생들이 전·출입할 경우 종전 일할계산 방식에 따른 징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각 호를 새롭게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 조례안 제6조는 전출의 경우 수업료 등의 반환사유 발생시 일할계산하는 방법으로 수업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전·출입에 따른 수업료와 입학금의 납부 및 반환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4)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 그리고 전·출입시 징수

---

####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바, 유치원은 이에 따른 징수 방법을 적용(안 제4조제1항)하면 되므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학교의 장이 수업료 등을 정하는 학교를 제외한 초·중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4항5)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없는바, 학생들이 이들 학교에 전·출입할 경우 수업료 등에 대한 징수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학생의 전·출입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방법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초·중등학교 중 학교의 장이 별도로 수업료 등을 정하는 사립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에 한정될 것입니다.

**[표-1] 동 개정조례안 적용 대상 학교**

구 분	공·사립 유치원	사 립								합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특성화	각종 학교	자사고	특목고	고등기술 학교	각종 학교	소계	
학교수	539	39	2	2	22	10	1	2	35	617

\* 특성화중학교: 대원국제중학교, 영훈국제중학교, \* 각종학교(중): 선화예술중학교, 예원학교

- 4)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입학금은 유아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 ③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같은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 ④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유치원 원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 5)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① ~ ③ (생 략)
  - ④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유형	학교수	학교명
자사고	22	경문고등학교, 경희고등학교, 대광고등학교, 동성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보인고등학교, 선덕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송문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부속이화금란고등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장훈고등학교, 중동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하나고등학교, 한가람고등학교, 한양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휘문고등학교
특목고	10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명덕외국어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1	한국제과학교
각종학교	2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여명학교

- 따라서 동 조례 제4조제4항의 적용대상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한정되는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실효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의 전·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제3호는 전출과 전입으로 구분하여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로 각각 규정함으로써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징수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이와 같은 개정에 따라 수업료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6조 역시 학교의 장이 수업료 등을 정하는 학교에 한정되어 수업료 반환사유가 발생하는바, 안 제6조제2항은 실효성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명확히 했다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동 조례안의 개정사항은 용어정비 및 관련 상위법률의 준용 등에 관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공립·사립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금액) ① 공립·사립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
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5.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6.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7.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8.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

한 학생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생의 경우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지난 분기 또는 지난 달의 수업을 전부 휴업(방학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달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제4조(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징수한다.

② 초·중등학교 수업료는 별표 1과 같이 4분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와 다르게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입학금은 학생이 입학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④ 학생이 제2조제2항의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유치원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

1.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2.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⑤ 재입학이나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징수일) ① 수업료의 징수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그달의 시작일 10일 이전으로 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내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지급일 후

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재학 중인 학생이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자퇴한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고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p>	<p>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0조에 따라 <u>공·사립의 각급학교</u>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와 ----- 제10조 및 제10조의2----- <u>공립·사립 학교</u>----- -----.</p>
<p>제2조(징수금액) <u>공·사립의 각급 학교</u> (이하 “학교” 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계획, 중기 서울교육재정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u>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u></p>	<p>제2조(징수금액) ① <u>공립·사립</u> ----- ----- ----- ----- -----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u></p>
<p>1. ~ 2. (생략)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6조의 <u>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u>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학교</p>	<p>1. ~ 2. (현행과 같음) 3. ----- -----에 따른 ----- -----</p>
<p>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u>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u>, 영 제91조에 따른 <u>특성화고등학교</u> 및 영 제91조의3에 따른 <u>자율형 사립고등학교</u>, 영 제105조에 따른 <u>자율학교</u> 중 <u>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u></p>	<p>4.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u>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u> 5. 영 제91조에 따른 <u>특성화고등학교</u> 중 <u>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u> 6. 영 제91조의3에 따른 <u>자율형 사립 고등학교</u></p>

현 행	개 정 안
<p>5. (생략)</p> <p>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p> <p>① 학교의 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u>자</u> 등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u>관련</u>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⑤ <u>학교의 수업을 분기 또는 그달 전부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그달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u></p> <p>⑥ <u>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u></p> <p>제4조(징수방법) ① 유치원의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p> <p>② 초·중등학교 수업료는 별표 1과 같이 <u>4분기(방송통신고등학교는 상·하반기)로</u>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u>따로</u>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7.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u>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u></p> <p>8. (현행과 같음)</p> <p>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p> <p>① ----- ---<u>학생</u>----- -----.</p> <p>② ----- -----<u>이나 그 밖의</u> ----- ----- -----<u>에서</u>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지난 분기 또는 지난 달의 수업을 전부 휴업(방학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달의 수업료를 면제한다.</u></p> <p>⑥ (삭제)</p> <p>제4조(징수방법) ① -----<u>와</u> <u>입학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징수한다.</u></p> <p>② ----- -----<u>4분기로</u>----- ----- ----- <u>이와</u> <u>다르게</u> -----.</p>

현 행	개 정 안
<p>③ 입학금은 <u>학생의 입학시에</u> 전액을 징수한다.</p> <p>④ 학생이 <u>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u></p> <p>1. <u>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u></p> <p>2. <u>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u></p> <p>3. <u>제2조 단서의 학교에 전출입할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또한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학교, 영 제90조제1항제7호 및 영 제91조의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u></p> <p>1. (신설)</p> <p>2. (신설)</p> <p>⑤ <u>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u></p>	<p>③ -----<u>학생이</u>----- <u>할 때에</u>----- -----.</p> <p>④ ----- <u>제2조제2항의 학교에 전출입</u>-----<u>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유치원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다.</u></p> <p>1. (삭제)</p> <p>2. (삭제)</p> <p>3. (삭제)</p> <p>1. <u>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다.</u></p> <p>2. <u>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u></p> <p>⑤ <u>재입학이나</u> ----- -----<u>재입학 또는 편입학</u>----- <u>계산하여 징수</u>----- -----.</p>

현 행	개 정 안
<p>⑥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u>징수한다.</u></p> <p>제5조(징수일) ① 수업료의 징수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그달의 시작일 10일 <u>전으로 할 수 없다.</u></p> <p>② <u>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u>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일은 <u>학기시작일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u> 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u>납부하는</u>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u>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u></p>	<p>⑥ ----- ----- <u>계산하여 징수한다.</u></p> <p>제5조(징수일) ① ----- ----- ----- <u>이전으로 정할</u> ----- --.</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u> ----- ----- <u>학기 시작</u> ----- <u>정할</u> -----.</p> <p>③ ----- ----- ----- <u>내는</u> ----- ----- ----- <u>지급일 후로</u> <u>정하여야 한다.</u></p>
<p>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생략)</p> <p>② <u>제4조제4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하고, 제4조제4항제3호의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u></p> <p>③ (생략)</p> <p>1. (생략)</p> <p>2. 입학허가를 받은 <u>자가</u>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p> <p>3. 재학 중인 <u>자가</u>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p> <p>4. 재학 중인 <u>자가</u> 휴학의 의사를 표</p>	<p>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호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u> -----.</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사람이</u> ----- -----</p> <p>3. ----- <u>학생이</u> ----- -----</p> <p>4. ----- <u>학생이</u> -----</p>

현 행	개 정 안
<p>시한 경우</p> <p>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u>당해</u> 학교에 입학할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④ 퇴학처분을 <u>당한 자</u>의 수업료 미납액은 <u>이를</u>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⑤ 자퇴한 <u>자</u>의 수업료 미납액은 <u>이</u>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7조(공고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u>정한</u>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u>늦어도</u> 신입생 입학원서 <u>접수개시일 10일전</u>에 하여야 한다.</p> <p>제8조(시행규칙) (생략)</p>	<p>-----</p> <p>5. ----- <u>해당</u></p> <p>-----</p> <p>-----</p> <p>④ ----- <u>받은 학생</u> -----</p> <p>-----.</p> <p>⑤ ----- <u>학생</u> -----</p> <p>-----.</p> <p>제7조(공고 등) ① -----</p> <p>-----</p> <p>----- <u>정하였을</u> -----</p> <p>-----.</p> <p>② -----</p> <p>----- <u>접수 시작일 10일 전까지</u> -----</p> <p>-----.</p> <p>제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